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가-25

융합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

(A Study on the Telecom Accounting System
under convergence environment)

2009. 11. 30

연구기관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가-25

융합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

(A Study on the Telecom Accounting System
under convergence environment)

2009. 11. 30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책임자 : 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장 이상우

인 사 말 씀

오늘날 통신분야는 방송분야와의 융합과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의 가속화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통신규제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고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편익을 증진하는 경쟁정책 추진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회계는 역무별 배부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 자산 등을 분류·배부하는 것으로 공정경쟁 등을 위한 합리적 정책판단에 필요한 회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개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통신사업자간의 합병으로 인해 단일 기업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회계정리가 복잡해져 단순 회계오류가 역무간 상호보조나 각종대가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정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결합판매서비스의 증가, 판매촉진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 통신기술 및 서비스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통신회계제도내에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통신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회계분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신사업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연구진 뿐 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학계 및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신회계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자료 및 아이디어의 활발한 공유

를 전제로 한 지속적인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의 이상우 팀장이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현창희 본부장, 고창열 선임연구원, 강선아 선임연구원, 최선미 연구원, 정내양 연구원, 구정은 연구생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로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 한양대학교 박준호 교수, 동국대학교 양동훈 교수, 국민대학교 이태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정양현 교수, 홍익대학교 정영기 교수, 삼덕회계법인 문상철 이사, 안진회계법인 박언용 전무, 우리회계법인 박형건 전무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과가 탄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김도환 사무관, 박귀식 주무관 및 케이티,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HCN 등 통신사업자의 관계자 제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김 홍 남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융합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상우(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팀장)

참여연구원 : 현창희(기술전략본부, 본부장)

고창열(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강선아(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최선미(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연구원)

정내양(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연구원)

구정은(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연구생)

요 약 문

1. 제 목

융합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간 각 대가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수합병, 결합판매서비스의 증가, 단말기보조금등 판매촉진비의 증가 등 변화하는 전기통신사업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하고 회계분리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의 획득을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 및 합리적 배부기준 설정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역무간 상호보조 및 회계분리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전기통신역무 원가 산정 및 각 대가 산정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근간이 되는 회계분리기준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통신회계제도의 개선이슈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역무별 상호보조 금지를 강화하고, 결합판매서비스 배부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회계제도의 정비등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 및 결과

회계분리 기초자료 집계 및 공통비 배부 등 회계분리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영업보고서의 경영자 확인 의무화, 회계분리지침서의 사업자간 공개, 복수의 배부기준간 우선순위 부여, 배부기준 변경 적용시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명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간 합병으로 인해 단일 기업이 더욱 더 다양한 역무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영업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마케팅비에 대한 회계분리기준을 세분화하여 역무간 상호보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리점 수수료 및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 할당 명시,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콜센터 비용의 별도 분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합판매서비스의 수익 및 비용의 명확한 분류와 배부를 통해 결합판매 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판매서비스 수익 배부기준 명확화, 결합판매서비스 공통비용 별도 분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 정책적 활용내용

연구결과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 등 통신회계 제도정비에 활용될 것이며,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유도하여 상호접속, 보편적 의무 등 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6. 기대 효과

방송통신 융합환경하에서의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목적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사업자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정비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 절차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사후 규제 및 시의적절한 요금 규제 확립을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제도 정비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산정 및 망간 접속에 따른 사업자간의 거리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Telecom Accounting System under convergence environmen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various problems in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decision making and then to suggest a more realistic and applicable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Following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accounting principles must be revised to adjust to them. Basic information on telecommunication business is necessary for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making for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Since accounting data supplies basic information for rate making, interconnection charge,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universal service fund, policy development and execution for improvement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structure, the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needs to be reviewed consistently.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provides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t reviews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nd major contents of Accounting Principles established for ensuring fair competition among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hapter 3 reviews the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 and finds strengths and weakness of those. We study main issues related to current Accounting Revision and revises them.

4. Research Results

The Accounting Principles was revised to include change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owever, the Principles still needs to be reviewed and analysed regularly for providing more useful information for governmental policy decision-making and its implementation, and also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to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formation plan for the Account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ll be reviewed and used for amending current Principles. The cost information by services calculated by revised

Accounting Principles will be more useful for tariff charges, interconnection charge, universal service fund and etc.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 foundation which helps to build up a variety of useful cost information data for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through revising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will drive a fair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prevent consumers' welfare from being decreased by controlling non-fair competition factors. It will also contribute to calculate proper cost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ccess charges and universal service costs through rational accounting separation. Moreover,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velop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because it drives fairer competition among operators through providing useful and proper accounting information.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제 2 절 연구 범위	4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5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7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7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7
제 2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9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9
2. 현행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내용	13
제 3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운영	17
1. 회계분리의 개념 및 원칙	17
2. 회계분리의 절차	18
3. 영업보고서	24
제 4 절 회계분리기준 해외사례 및 시사점	27
1. 미국	27
2. 일본	31
3. 영국	34
4. 시사점	39

제 3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41
제 1 절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43
1. 회계분리관련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범위	43
2. 배부기준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명시	45
3. 내부거래 대상 역무 범위 및 대가	46
4. 운영절차 개선을 위한 경영자 확인제도 도입	50
제 2 절 원가분류방법 및 배부기준의 합리적 개정	52
1. 공통비 배부기준의 명확화	52
2. 전송 및 중계선로 운영공통비 역무별 배부기준 개선	56
3.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배부기준 개선	61
4. 대리점 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할당	62
5. 콜센터 원가 분류 기준 개선	63
6.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65
제 3 절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	67
1.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 근거	67
2. 합병시 영업권 인식 근거 마련	68
3. 결합판매 수익 배부	70
4.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	71
5.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삭제	72
6. 투자보수율 산정관련 단서조항 삭제	74
7. 별지서식 보완	76
제 4 장 중장기 추진사항, 검증사항 및 현행유지사항	77
제 1 절 중장기 추진사항	79
1. 회계정리위반 처벌강화	79

2. 투자보수율 산정대상 및 산정방식	81
3.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기준 검토	83
4.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분리기준 개정	87
제 2 절 검증사항	90
1. IP-xDSL(BBX) 방식의 가입자선로 분류	90
2. 가입자선로에 대한 미사용자산 규정	91
제 3 절 현행유지사항	93
1. 검증프로세스 강화	93
2. 광고선전비의 공통비 배부기준	93
3. 회계분리절차 개선	94
4. 회계분리 대상사업자 범위 개선	95
5. 타서비스 회계분리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95
6. 피합병회사의 유형자산 가액 계상	95
7. 영업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96
8.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세	96
제 5 장 결 론	99
참 고 문 헌	103
부 록: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고시안	105

표 목 차

<표 2-1>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8
<표 2-2>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11
<표 2-3> 현행 회계규정의 주요내용	13
<표 2-4>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주요내용	15
<표 2-5> 공통 자산 및 감가상각비와 공통비에 대한 역무별 배부기준	21
<표 2-6> 지역별 회계분리시 영업비용의 배부기준	23
<표 2-7> 영업보고서 세부양식 및 주요내용	25
<표 3-1>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범위 관련 개정안	44
<표 3-2> 배부기준 변경내역 명시 관련 개정안	46
<표 3-3> 회계분리기준의 내부거래인식 변천	47
<표 3-4> 회계분리기준의 자가소비사업용비용 정의 관련 규정 변천	48
<표 3-5> 내부거래 인식 관련 개정안	50
<표 3-6> 경영자 확인제도 관련 개정안	51
<표 3-7> 공통비 배부기준 명확화 관련 개정안	54
<표 3-8> 전송 및 선로운영비 배부기준 개정안	57
<표 3-9>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배부기준개선 관련 개정안	61
<표 3-10> 단말기보조금 및 대리점수수료 직접할당 관련 개정안	63
<표 3-11> 콜센터 원가분류관련 개정안	64
<표 3-12>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관련 개정안	66
<표 3-13>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 관련 개정안	67
<표 3-14> 합병시 영업권 인식 관련 개정안	69
<표 3-15> 결합판매 수익 배부 관련 개정안	70
<표 3-16>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관련 개정안	72

<표 3-17> 지역별 회계분리 삭제안	73
<표 3-18> 투자보수율 산정관련 개정안	75
<표 3-19> 통계의 보고 관련 개정안	76
<표 4-1> 최근 5년간 회계분리 위반건수	79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 개정안	80
<표 4-3> 이통3사별 트래픽 기준 비교표('08년 기준)	86
<표 4-4> K-IFRS도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고려사항	88

그 립 목 차

[그림 2-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9
[그림 2-2] 회계분리의 절차	18
[그림 2-3] 미국의 회계분리 과정	30
[그림 4-1] 초고속 인터넷 망구성도	90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간 각 대가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며,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수합병, 결합판매서비스의 증가, 단말기보조금등 판매촉진비의 증가등 변화하는 전기통신사업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신사업자 합병에 따라 회계정리의 복잡화는 매우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통신사업자는 매출정체를 개선하고 음성통신축소, 유무선 대체, 사업자간 경쟁 등에 기인한 고객해지율 감소 및 성장기회 선점을 위한 결합판매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정교한 결합판매관련 회계분리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의 보급률이 96%에 달하여 단말기보조금 등 판촉비를 통한 가입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요금규제 및 이용자 차별 등 금지행위 규제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판매촉진비의 직접비 할당 및 공통비 배부의 명확한 회계분리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하고 회계분리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의 획득을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 및 합리적 배부기준 설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역무간 상호보조 및 회계분리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전기통신역무 원가 산정 및 각 대가 산정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근간에 해당하는 회계분리기준의 위상을 재정

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 2 절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통신회계제도의 개선이슈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역무별 상호보조 금지를 강화하며, 결합판매서비스 배부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회계제도의 정비등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를 위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을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의 원가산정,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역무의 원가 정보를 포함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을 주이용자로 하는 회계제도로서,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정책기관이라는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무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전기통신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공통원가 및 공통수익의 합리적 회계분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에 의

한 의무 또는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회계의 결과물은 일반적인 재무제표가 아닌 영업보고서라는 점도 재무회계와의 차이점이다.

<표 2-1>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구분	통신회계	재무회계
목적	규제목적 달성	재무적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당해사업자	투자자, 금융기관, 일반 대중 등
관련 규정	회계규정, 회계분리기준 등	기업회계기준, 회계준칙 등
성격	원가회계	일반회계
수익·비용 인식	개별 의무별	회사 전체
결과물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작성·제출 주기	1년 기준 (약식: 반기보고서)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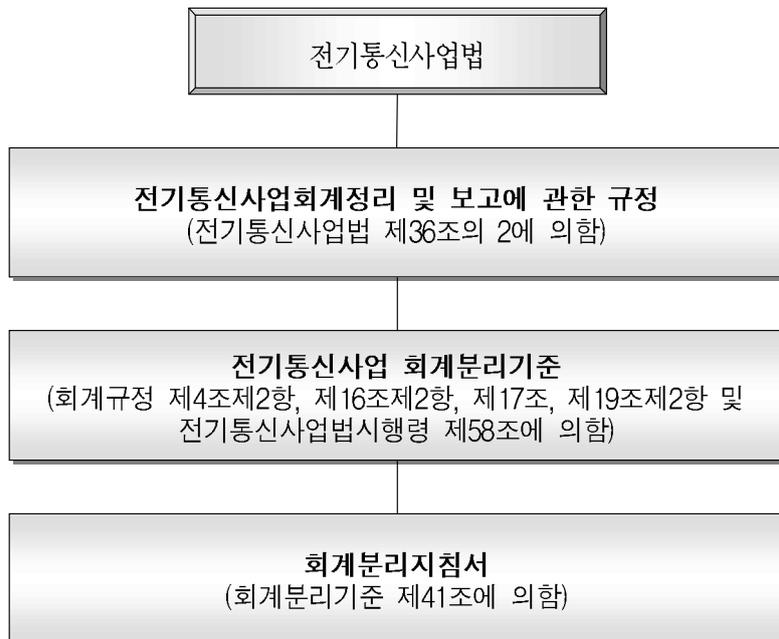
제 2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가. 현행 법체계

정보통신부는 90년대 초 전기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경쟁, 요금, 접속, 설비제공, 설비공동사용 등의 제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제반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회계제도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보통신부는 1994년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림 2-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이후 수차례의 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함), 회계분리기준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분리지침서」로 이루어져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1991년 8월 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회계규칙은 1994년 8월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2008년에 “회계규정”으로 재고시되었다.

1994년 최초 제정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를 제도화하고,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였다. 1996년에는 1차 개정시에는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이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되었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가 변경되었다. 이후 2001년에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차 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이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이라고 명시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를 또다시 4개로 변경하였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05년 3차 개정에서는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기관의 변경과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및 인터넷접속역무와 인터넷전화역무 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된 회계분리기준은 1996년 6월 최초 제정되어 현재까지 5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최초 제정시의 주요내용은 20개의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규정과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및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등이다. 2001년 1차 개정시에는 회계규칙 2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확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판매촉진

비 상한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 또는 신설되었다. 2005년 1월 2차 개정시에는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의무 추가하고,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 수정하였고, 동년도 12월에는 회계규칙 3차 개정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한 또 한번의 회계분리기준 개정이 시행되었다. 2006년 12월의 4차 개정시에는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가 추가되었고,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와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2007년 12월 5차 개정시에는 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를 포함한 역무 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및 별지서식 수정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2-2>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시기	법령 또는 고시	제정 및 개정 내용
1991년 8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요금산정의 공정성: 상호내부보조, 가격요소조작, 비용전가 금지
1994년 8월	회계규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의 제도화: 통신역무간 회계분리 회계분리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
1996년 5월	회계규칙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 회계분리대상 역무를 8개에서 7개로 변경
1996년 6월	회계분리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서비스 도입으로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로 규정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2001년	회계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을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3월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 명시 7개 역무를 4개로 바꿈
2001년 3월	회계분리기준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에서 27개로 확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규정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 추가
2005년 1월	회계분리기준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직무 추가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 수정
2005년 12월	회계규칙 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에서 통신위원회로 변경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인터넷접속역무 및 인터넷전화역무 추가
2005년 12월	회계분리기준 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2006년 12월	회계분리기준 4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 추가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조항 신설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 신설
2007년 11월	회계규칙 4차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수익, 비용등의 분류 개정 및 신설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2007년 12월	회계분리기준 5차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별지서식 수정
2008년 2월	회계규칙이 회계규정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법령 재고시(기존 법령과 내용은 동일)
2008년 5월	회계분리기준 개정	

2. 현행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내용

가. 회계규정

회계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여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틀을 제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3> 현행 회계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1조~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적용대상,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일반원칙 • 영업보고서의 종류 •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구분
제2장 대차대조표 (7조~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및 무형자산의 구성(사용 중인 자산과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구분) • 통신설비의 분류 및 정의 •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건설중인 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 및 정의
제3장 손익계산서 (13조~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제4장 역무별 회계 분리 (15조~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 • 역무의 분류 및 영업비용등의 역무별 분리 • 전국사업자의 지역별 회계분리의 의무
제5장 보칙 (19조~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계년도 종료 후 90일내 영업보고서 및 분리지침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 보고서 검증 및 관련 회계자료의 요구

현행 회계규정은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회계분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적용대상,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영업보고서의 종류와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2장 대차대조표에서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구성, 통신설비의 분류 및 정의,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건설 중인 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에서는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과 영업비용등의 역무별 분리 및 전국사업자의 지역별 회계분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5장 보칙에서는 검증목적의 영업보고서 및 분리지침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및 관련 회계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나. 회계분리기준

회계분리기준은 회계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회계분리기준은 총칙,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역무별 회계분리,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회계분리기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와 세부역무의 정의 및 회계분리의 절차 및 회계정리단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에는 자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유형 자산 등의 취득 및 감가상각방법, 내부거래 및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의 인식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에는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및 세부분류,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기능공통 자산 및 공통비의 분류기준 및 배부,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

업의 분류, 미사용공통자산등의 분류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있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에서는 비용과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고, 총괄원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에서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등, 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고, 제6장 보칙, 부칙에는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증에 관한 사항,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통계의 보고 및 보고서 등의 공개에 대한 사항들이 주요 내용이다.

<표 2-4>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1조~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용어의 정리 및 세부역무의 정의: 4개 역무 28개 서비스 • 회계분리의 절차 및 회계정리단위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6조~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등의 취득 및 감가상각방법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 내부거래 및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의 인식 •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13조~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및 세부분류,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 기능공통자산 및 공통비의 분류기준 및 배부 •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미사용공통자산등의 분류
제4장 역무별 회계 분리 (22조~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 전기통신설비운영, 일반지원자산운영, 판매영업기능, 고객서비스기능, 일반관리기능, 기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 공통전기통신설비, 공통일반지원자산, 기타 역무공통자산 역무별 배부 • 총괄원가, 사업비용, 투자보수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37조~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용, 영업외비용등, 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
제6장 보칙, 부칙 (40조~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부기준등의 적용, 회계분리지침서 및 보고서 제출, 검증 •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계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유형자산 등의 관리 기록 • 통계의 보고 및 보고서 등의 공개

제 3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운영

1. 회계분리의 개념 및 원칙

회계분리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간 상호 보조를 방지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회계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서비스 또는 범주별(규제/비규제)로 자산, 수익 및 비용을 집계하고 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은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분리 대상 항목을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 및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사용하고 내부거래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신뢰성 있고 유용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규정 제15조는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을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분리 대상 항목을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 및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회계규정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이다. 이러한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이다. 또한 이들 항목에 대한 역무별 분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분리 과정에서,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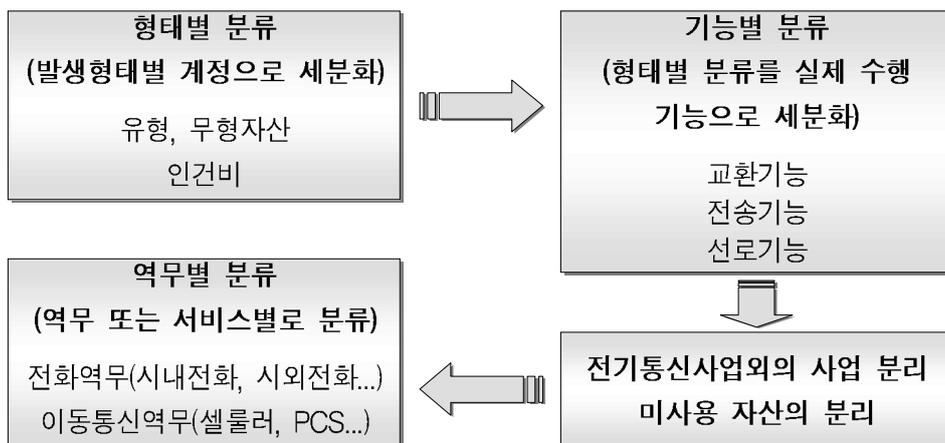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배부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회계분리의 절차

회계분리는 개별 서비스별 또는 범주별로 수익, 자산 및 비용을 집계하고 배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회계분리는 재무회계제도에 의해 집계된 회계정보로부터 시작된다. 재무회계제도에 의해 산출된 정보는 형태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회계분리 절차를 거쳐 역무 또는 서비스별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4조는 회계분리의 절차를 형태별 분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 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 등의 역무별 회계분리의 순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2-2]는 회계분리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 회계분리의 절차



가.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형태별 자산,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의 분류를 따른다. 형태별로 분류된 자산,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 교환, 전송, 선로, 전원, 정보처리, 일반지원 등의 기능으로 분류한다. 기능별로 원가를 재분류하는 이유는 동질의 원가를 모아, 이러한 원가 중에서 역무 공통에 해당하는 자산과 비용에 대하여 특정한 배부기준을 원가동인으로 하여 역무별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전기통신사업외의 자산과 미사용자산의 분리

회계분리기준 제20조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배부기준은 회계규정 제4장의 배부기준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단,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 자산 등의 금액이 기준금액(당해사업자의 당해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전기통신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과 비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자산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전기통신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 등은 미사용자산으로 분류하여, 실제 전기통신사업에서 사용중인 자산을 분류하게 된다.

다. 역무별 분류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역무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역무에 할당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자산 중에서 둘 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자산별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해야 하는데, 교환기능 설비 및 감가상각비, 영업비용은 교환기사용시간을 최우선 배부기준으로 하고, 전송기능 설비 및 감가상각비, 영업비용의 경우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는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우선 배부기준으로 한다. 단말의 경우는 자산 및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 비율로 배부하지만, 영업비용은 단말기능의 역무별 직접비 비율로 배부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공통자산 및 공통비는 각 기능별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되어진다.

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자산 및 감가상각비는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판매영업 지원기능자산, 일반관리 지원기능자산,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의 4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하고, 토지·건물·구축물 운영비는 역무별 면적비율, 그 외의 운영비는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로 배부하게 된다.

또한 공통 미착·건설중인자산의 배부는 해당기능자산의 배부기준에 의거하고, 공통 무형자산 및 상각액 공통비는 공통일반지원자산의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경우는 판매영업기능, 고객서비스기능, 일반관리기능, 기업이미지광고기능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배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표 2-5> 공통 자산 및 감가상각비와 공통비에 대한 역무별 배부기준

구분	자산 및 감가상각비	영업비용
교환	교환기사용시간. 단, 어려운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설비 장부가액 비율, 교환기 수용가입자수비율	교환기사용시간, 단 어려운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2. 교환설비 취득가액 비율 3. 기집계된 교환비용 비율
전송	E1급을 1회선으로 하는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 단, 어려운 경우 T1급으로 산출한 회선수를 사용하며, 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장부가액 비율, 사용시간	E1급을 1회선으로 한 실제사용 회선수 단, 어려운 경우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 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 또는 사용시간
선로	1. 가입자선로: 운용실선수 2. 중계선로: 실제사용되는 회선수 비율	1. 중계구간: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 단,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T1급 산출한 운용회선수 2. 가입자선로구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3. 광동축혼합망 - 광송수신기~가입자단분배기: 제공되는 서비스에 각각 동일비율 - 가입자단분배기~가입자단말장치: 운용 중인 선로 회선수
단말	직접 분류된 단말설비 장부가액 비율	단말기능의 역무별 직접비 금액비율
정보처리	직접분류된 정보처리설비 장부가액 비율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 비율
전원	공통자산 배부 후 교환·전송 및 단말기능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전원기능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일반지원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교환~전원의 배부기준을 준용. 2. 판매영업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일반관리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전	1. 토지, 건물 등 건축물: 역무별 면적비율 2.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기통신설비 및 판매영업기능별 인원수 비율 4.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역무별 요금 수익 비율		
미착·건설 중인 자산	자산 분류기준 준용,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장부가액 합계액 비율	판매 영업 기능	1. 광고선전비: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역무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 3. 단말기보조금: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고객 서비스 기능	1. 가입자관리비용: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역무별 요금 수익 비율 3. 청구·수납비용: 역무별 청구건수 비율
무형 자산	공통 일반지원자산 역무별 배부 준용	일반관리기능	역무별 인원수 비율
		기업이미지광고기능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또는 기집계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접속료	역무별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수익 제외)비율
		설비 사용료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또는 기집계 설비사용료

라. 지역별 분류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는 둘 이상의 사업구역에서 단일사업자가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을 준용하여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을 사업구역별로 분리하는 것이다.

회계분리기준 제37조에 의하면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비용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는 교환과 전송운영비용의 경우, 지역별 각 시설 수 또는 가입자수로 배부하고, 단말운영비용은 관련가입자수, 전원운영비용은 설비 취득가액비율로 한다. 또한 판매영업비와 가입자수, 관리비는 기집계비용 비율, 접속료는 매출액 비율, 설비사용료는 직접분류하거나 가입자수 비율을 사용하며,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분류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2-6> 지역별 회계분리시 영업비용의 배부기준

구 분	배부 기준
교환운영비용	지역별 교환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전송운영비용	지역별 전송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단말운영비용	관련 가입자수
전원운영비용	전원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판매영업비	가입자수
관리비	기집계비용 비율
접속료	매출액 비율
설비사용료	직접분류 또는 가입자수 비율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분류와 동일한 기준

영업외비용의 지역별 분류에 대해서는 회계분리기준 제38조에 의거하는데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외비용등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는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 기준을 준용한다.

또한, 회계분리기준 제39조에는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유형자산 등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는 공통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 기타 역무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부 기준을 준용하되, 전원설비는 전원설비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영업보고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에 의해 산출되는 최종 결과물은 영업보고서이다. 회계규정, 회계분리기준, 회계분리지침서에 따른 회계분리 절차를 거쳐서 생성되는 영업보고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익, 자산, 원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회계분리지침서는 통신위원회가 영업보고서 검증의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회계분리기준 제41조에 의거하여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조직도, 각 기관별 배부방법, 원가의 흐름도,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방법,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의 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회계분리지침서에는 자산의 분류 및 배부 기준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회계분리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회계분리 절차를 거쳐 회계분리를 한 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들이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는 총 19개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역무별 회계분리를 위한 영업비용/감가상각비/영업외손익/유형자산등에 대한 역무별 배부명세서도 양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영업보고서의 세부양식 및 주요내용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영업보고서 세부양식 및 주요내용

번호	양 식 명	주요 내용
1	대차대조표	일반 대차대조표와 유사하나, 통신설비자산등에 대한 세부 형태별 내역이 포함
2	손익계산서	일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나, 영업수익 및 비용의 역무별 내역이 포함
3	영업통계	역무별 수익, 비용, 투자보수에 대한 요약
4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	영업수익 세부 명세
4-1	결합판매 요금수익 배부 명세서	결합판매 요금수익 배부 명세
5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회계분리대상 역무별 세부 영업비용 내역
5-1	결합판매 직접비 배부명세서	결합판매 직접 비용 배부명세서
6	역무별 영업외손익 명세서	역무별 영업외손익 세부 명세서
7	기능별 인건비 및 경비 명세서	인건비 및 경비의 기능별 명세서
8	내부거래 수익 및 비용명세서	내부거래제공서비스의 수익 및 이용서비스의 비용 명세서
9	자가소비사업용거래 수익 및 비용 명세서	자가소비 사업용 제공서비스와 이용서비스 간 거래내역
10	형태별 영업비용의 역무별 분류 명세서	계정과목별 역무별 분류 내역
11	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 배부명세서	공통자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 배부명세서 및 공통운영비 배부명세서
12	형태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형태별 유무형자산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내역

13	기능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기능별 유무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내역
14	감가상각비등의 역무별 명세서	감가상각비 등의 역무별 배부명세서
15	유형자산등 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유형자산등 기능/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16	유형자산등 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유형자산등 기능/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17	영업통계 명세서	역무별 수익, 비용, 요금기저, 투자보수 등의 회계분리결과와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고용인원수 등의 활동자료

제 4 절 회계분리기준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미국

가. 규제권역

미국의 경우 주내(intrastate)서비스는 주 공익서비스 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이하 'PUC'라 함)에서 관할하고 주간(interstate)서비스와 국제(international)서비스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함)에서 관할한다. LATA간(interLATA) 서비스의 경우, 주내에서의 LATA간(interLATA)서비스는 PUC에서 규제하고 주간의 LATA간(interLATA) 서비스에 대해서는 FCC에서 규제한다.

회계분리는 재무결과를 연방규제 서비스와 주규제 서비스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회계분리결과는 주간서비스의 요금 결정, 주내서비스의 요금 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과 도매요금 산정의 자료로 사용된다. 회계분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존전화사업자(ILEC: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의 원가를 주간서비스 부분과 주내서비스 부분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

나. 회계규칙

FCC의 회계와 회계분리 관련 규칙들은 연방규제법령집(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근거한다. Title 47은 통신부분으로서 Part 0부터 199까지이다. 그 중 회계분리관련 부분은 Part 32, Part 36, Part 64이다. Part 32는 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로

보고 양식의 세부 계정과목을 설명하고 있다. Part 36이 핵심적인 회계분리 관련 내용으로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간의 회계분리를 설명하고 있다. Part 64는 사업자들과 관련된 기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다. 회계제도 관련 규정

전기통신회계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의 하부 Parts이다. 그 중 회계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Parts는 Part 32, Part 36, Part 64 이다.

1) Part 32

Part 32는 역사적 원가에 의한 재무회계시스템에 의해 운영결과와 재무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따르고 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FCC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FCC가 제시한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재무자료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FCC는 규제대상 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연간 1.25억\$이상인 회사의 경우 A 클래스로 구분하고 규제대상 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연간 1.25억\$ 미만인 경우 B 클래스로 구분한다. B 클래스에게는 A 클래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A 클래스에게는 상세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Part 36

Part 36은 규제부문의 원가를 주간(interstate) 또는 주내(intrastate) 영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설비투자과 비용의 발생 패턴은 비용 중 얼마가 배부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어떤 비용

이 특정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하면 그 비용은 그 서비스에 할당되어야 한다. 주간서비스와 주내서비스 양 서비스 모두를 위해 발생한 투자와 비용의 배부는 배부 기준에 의해 배부하여야 한다. 배부기준으로는 사용량이 대표적이며 지원하는 설비 및 기능의 관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사용량은 통화량이 될 수도 있고, 설비의 가동시간이 될 수도 있다.

3) Part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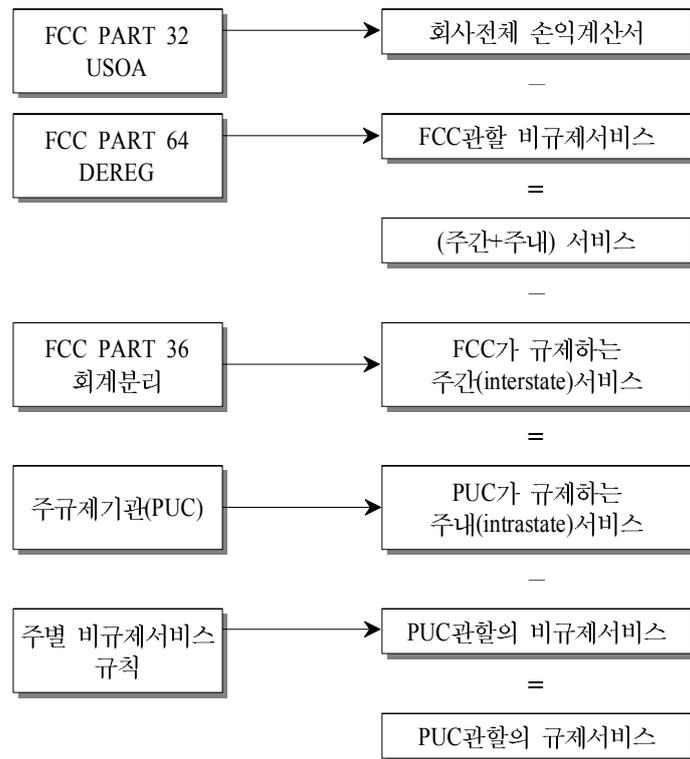
Part 64는 다양한 규칙을 담고 있다. 계정비용을 규제서비스와 비규제 서비스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분리과정에서 중요한 규칙은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의 원가 배부에 관한 것이다. Part 64는 원가배부방법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규제서비스에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약관 요율로 규제서비스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내부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관상의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내용이다. 둘째, 원가는 가능하다면 직접 할당하여야 한다. 셋째, 공통원가는 배부가 용이하도록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대해 원가동인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배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넷째, COE(Central Office Equipment)의 원가, 재고자산 등의 공통원가는 규제/비규제로 나누어서 사용량에 따라 배부한다.

라. 회계분리

회계분리는 먼저 회사전체 손익계산서(또는 재무제표)에서 Part 64를 적용하여 주간서비스이면서 규제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외시킨다. 다음으로 Part 36을 적용하여 주간서비스이면서 FCC의 규제를 받는 서비스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PUC 관할의 비규제서비스를 제외시키면 PUC가 관할하는

주내서비스의 회계분리결과가 도출된다. 원가배분은 활동기준원가(Activity Based Costing)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용량 등을 활용한 인과관계에 충실한 배부를 장려하고 있다.

[그림 2-3] 미국의 회계분리 과정



마. 보고서 제출

미국은 회계연도 익년도 4월 1일까지 직전 년도의 모든 보고서를 FCC의 ARMIS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에 제출한 보고서의 수정 내용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RMIS에 제

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10종류에 세부 양식이 40개에 이르며 사업자들의 지위에 따라서 보고 의무의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규제대상 통신서비스의 연간 수익이 \$125백만 미만인 사업자는 보고 의무가 없다.

2. 일본

가. 개요

일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한 규제 회계제도로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과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접속회계규칙('접속회계규칙'이라 함)이 있다. 회계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회계의 정리)와 제30조(금지행위 등) 제5항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접속회계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1지정전기통신설비 접속) 제13항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나.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칙의 목적과 구성

회계규칙은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사업자와 지정 전기통신역무 제공사업자에 대한 준수 의무, 회계원칙 및 작성해야 할 회계정보, 회계정보의 제출, 자산 및 비용 등의 회계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규칙의 목적은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인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사업자"와 지정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지정 전기통신역무 제공사업자"에 대한 회계기준을 확립하여, 동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경영성적을 명확히 하여,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와 지정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와 동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금지행위 등 규정적용사업자”라고 함)의 회계기준을 확립함과 동시에 동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경영성적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회계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회계규칙이 정한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 개별주기표가 있으며 부속명세서로 고정자산등명세표, 관계회사투자명세표, 관계회사부채명세표, 유가증권명세표, 사채명세표, 차입금등명세표, 관계회사채무명세표, 인당금명세표, 자본금등명세표, 전기통신사업영업비용명세표, 기초적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표, 지정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표, 이동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표, 그 외 중요사항명세표가 있다.

금지행위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수치상황 등 회계에 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별주기표, 고정자산등명세표, 관계회사투자명세표, 기초적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표, 지정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표, 이동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표, 부대사업손익명세표, 그 외 중요사항명세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상기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소 및 사업소에 상기 보고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마음대로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비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때 손익명세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회계 감사인이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손익명세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한 수익 및 비용의 배부기준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무 대신에게 제출하고 총무대신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손익명

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회계분리

회계분리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 및 비용 등은 기능별 분류를 거쳐 역무별로 분류한다. 자산의 경우, 시내선로 및 기계설비, 시외선로 및 기계설비의 역무별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외의 전기통신역무관련 자산의 분리는 사업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접속회계규칙은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접속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계규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회계단위와 보조부문을 사용하고 있다. 회계단위로는 관리부문과 이용부문이 있으며, 전기통신설비를 세분화하여 설비별로 접속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설비구분이 있다. 보조부문으로는 지원설비와 전반관리가 있다. 자산 및 비용 등은 회계단위와 부조부문으로 세분화시킨 후, 회계분리를 수행한다. 지원설비와 전반관리로 분류된 자산과 비용 등은 관리부문과 이용부문으로 회계분리되며, 전기통신설비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설비구분으로 회계분리된다.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회계분리 절차를 거쳐 매년 접속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공표하고 있다.

3. 영국

가. 유럽연합의 규제지침서

유럽연합은 2002년도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6개의 지침서와 1개의 결정문을 공표하였다. 유럽의회와 위원회에서 공표한 지침서는 상호접속에 관한 지침서, 인허가에 관한 지침서, 규제 틀에 관한 지침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지침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서, 경쟁에 관한 지침서이며, 결정문은 무선주파수에 관한 결정이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새로운 통신사업규제에 의하여 시장을 분석하여 규제와 관련이 있는 시장 혹은 규제가 필요한 시장을 결정하고, 해당 시장의 경쟁상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는 규제의 목적에 의하여 의무가 부여된다. 상호접속지침에 의한 도매시장에 대한 의무, 보편적서비스지침에 의한 소매시장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의무 중에 회계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시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접속지침서는 회계와 관련하여 투명성 의무(제9조), 회계분리의무(제11조), 원가에 근거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가를 분류하는 주요 구분이나 비용배부에 이용한 원가계산제도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제13조)가 있다.¹⁾ 소매시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의무 지침서는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경우 원가계산제도 실시 혹은 준수상황을 공표할 의무(제17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

1) Directive 2002/19/EC, Article 9(Obligation of transparency), Article 11(Obligation of accounting separation), Article 13(Price control and cost accounting obligations)

2) Directive 2002/22/EC, Article 17(Regulatory controls on retail services)

영국은 유럽연합이 새로이 제안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규제 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통신법을 개정하였다. 이 통신법은 Ofcom의 고시인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와 함께 전기통신사업회계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2003년 통신법(이후 ‘통신법’이라함)은 6개의 장으로 나누어졌다. 제1장은 규제기관인 Ofcom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장은 통신망, 서비스 및 전파대역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텔레비전 수신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장인 제6장은 잡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법 제2장은 통신망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조건, 특권 사업자(Privileged supplier)에 관한 조건, 접속에 관한 조건 및 시장지배력(SMP)에 관한 조건 등이 있다. 시장지배력을 갖는 서비스에 관한 조건은 상기에서 논의된 회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87조(통신망 접근 등에 관한 조건) (6)항 (b)와 (9)항부터 (11)항은 도매원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91조(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규제 등에 관한 조건) (5)항과 (6)항 및 제92조(전용회선에 관한 조건) (2)항과 (3)항은 소매원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87조(통신망 접근 등에 관한 조건) (6)항 (b), (7)항 및 (8)항은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Ofcom 고시

규제를 위한 회계정보는 원가 지향 의무, 비차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허가 조건 위반 혹은 반경쟁적인 사례에 대한 조사를 보조하고, 요금 규제 설정 및 감시, 정책결정 혹은 시장 경쟁상황평가에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기관인 Ofcom은 통신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22일 BT와 Kingston Communications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이하 'Ofcom 기준'이라 함)³⁾를 발표하였다. 기준은 4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 2와 부칙 4는 BT에 관한 사항이고, 부칙 3과 부칙 5는 Kingston에 관한 사항이다. 부칙 2는 통신법 제48조 (1)항과 제86조 (1)항에 의해 BT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장과 관련한 규제회계에 대하여 BT에 부과되는 조건들을 통보하는 것이다. 부칙 2는 BT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정의하였으며, 동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34개의 회계 의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4는 회계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BT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6개의 지시사항이 있다.

회계의무조건은 주로 회계서류 작성, 감사, 제출 및 공지에 관한 의무들을 규정하였으며, 지시사항은 통신설비명세서 규정, 투명성 원칙 규정, 해당 영업보고서 작성, 제출 및 공표와 감사의견 규정, 영업보고서 양식과 내용, FRIA와 PPIA 감사기준 규정을 담고 있다. Ofcom은 회계의무에 관한 고시가 적절하고 균형잡힌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를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

3) Ofcom,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Final statement and notification- Accounting separation and cost accounting: Final statement and notification", 2004.7.22

다. BT의 회계의무

규제기관인 Ofcom은 BT에게 영업보고서(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와 회계지침서(Accounting Documents)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영업보고서는 BT에 부과된 의무에 대한 감독과 강제 활동을 수월하게 함이다. 즉, 원가에 기초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회계지침서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이다.

1) 영업보고서(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

BT가 시장지배력이 있는 시장은 19개의 도매시장과 7개의 소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Ofcom 회계의무에 관한 고시의 지침 4는 BT가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하는 39개의 회계서류 양식을 열거하고 있다. 39개의 회계서류에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회계보고서(Consolidated Statements), 각 도매시장에 대한 회계보고서(Market Statements), 각 도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회계보고서(Segment Statements)와 도매 서비스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있다. 소매시장에 대해서는 소매시장 전체에 대한 회계보고서(Consolidation Statements), 각 소매시장에 대한 회계보고서(Market Statements), 소매시장의 서비스군에 대한 회계보고서(Product Group Statements)가 있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시장에 대하여 각각 39개의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시장이 속해 있는 시장 및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또한 시장에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도매원가회계, 소매원가회계 및 회계분리, 작성하여야 하는 회계서류는 달라진다. 39개 회계서류 가운데 손익계산서(P&L: Profit and Loss Statement)와 평균투자자본표(MCE: Mean

Capital Employed)가 중요하다. 도매시장인 “Wholesale residential analogue exchange line services”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회계서류는 ‘도매 시장 손익계산서’, ‘도매시장평균투자자본보고서’, ‘현행원가에 의한 원가표’, ‘내부와 외부거래에 따른 원가 및 부담금 보고서’ 등이다.

2) 회계지침서(Accounting Documents)

BT가 작성하여야 하는 회계지침서는 총 4개이며, 주회계지침서(Primary Accounting Documents), 도매시장목록(Wholesale Catalogue), 소매시장목록(Retail Catalogue) 및 부회계지침서(Secondary Accounting Documents)이다.

라. 회계분리

회계분리 과정을 통해 BT는 회계장부의 수익과 원가 및 투자자본을 통신망 설비, 서비스 및 상품으로 귀속시킨다. BT는 각각의 수익과 원가 및 자산과 부채를 검토하여, 원가발생 유인 요소와 수익 발생 유인 요소를 확인하여, 원가를 통신설비, 서비스 혹은 상품으로 귀속시키고, 수익을 소매 상품과 도매 서비스로 귀속시킨다. 투자자본도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귀속시킨다. BT는 6단계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계분리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업원가, 영업수익, 자산 및 부채를 계층화된 코드와 조직 분류 조합인 F8-OUC 조합의 원가중심점으로 집계한 후, 이를 지원활동그룹, 지원설비그룹, 소매활동그룹, 주요설비그룹 및 소매상품으로 할당 혹은 배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원활동그룹의 원가중심점을 주요설비그룹, 지원설비그룹 및 소매상품으로 할당 혹은 배부한다. 지원활동그룹은 연구 개발활동이나 설비관리활동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원가중심점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원설비그룹의 원가를

주요설비그룹과 소매활동그룹으로 배부한다. 지원설비그룹은 통신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를 집계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원가중심점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 소매활동그룹의 원가를 소매상품으로 배부한다. 소매활동그룹은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를 집계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원가중심점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설비그룹의 원가를 통신망 설비로 일대일 혹은 일대다수로 배부한다. 주요설비그룹은 BT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원가중심점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신망 설비의 원가를 도매서비스로 배부한다.

4. 시사점

미국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보고서 양식에 해당 배부기준과 배분기준 수를 표시하도록 하여 공통원가의 배부 근거와 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업자별 보고 수준에 있어서 가격상한제 적용 정도, 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별로 다른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를 지역별/서비스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FCC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은 회계의무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작성하고 공표해야 할 회계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업자가 회계분리지침서를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회계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용과 수익 및 자산의 세부적인 분류와 배부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일본은 회계의무가 부과된 사업자가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융합 환경에 부합하도록 회계제도를 재정립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적합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규제에 적용하기 위해 개정필요성 및 개정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도록 도출해야 한다.

제 3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제 3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제 1 절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1. 회계분리관련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범위

가. 현황

회계분리기준 제48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별지서식 제1호(대차대조표), 제2호(손익계산서) 및 제3호(영업통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별지서식을 공개한다.

나. 문제점

타사업자의 회계분리방법에 대한 공개 기회 부재로 인해 회계분리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영업보고서 별지서식 3호(영업통계)는 공개시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 개선방안

회계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회계분리기준에 명시한다. 회계분리지침서의 경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공개하여 사업자별로 동일한 배부기준 및 동일한 원가산정방식의 설정을 유도하여 사업자간 공평성, 원가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회계분리지침서의 공개로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원가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대가 예상되며, 회계분리에 미숙한 후발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서비스별 원가산출 능력 배양의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

영업보고서 별지서식 제3호(영업통계)는 역무별 손익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므로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이하 ‘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도 공개 범위에 영업통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라.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범위 관련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삭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1.~2.(생략)	② 1.~2.(현행과 같음)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3.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최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영업통계를 공개범위로 유지하였음

2. 배부기준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명시

가. 현황

현재 회계분리기준에는 배부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제시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 회계분리기준 제40조에 따르면 배부기준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문제점

배부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제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므로 배부기준 선택 및 변경시 공정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다. 개선방안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부기준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배부기준 변경 타당성 검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회계분리지침서에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후 배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회계분리기준 제41조 제2항을 개정하고, 영업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에 별지 제17-1호(배부기준 변경전) 및 제17-2호(배부기준 변경효과)를 추가한다. 배부기준 변경효과는 배부기준 변경 개별 건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부기준 변경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사전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는 회계분리지침서의 사전검토 및 영업보고서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는 방통위에게 정당성을 소명하고 방통위는 소명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2> 배부기준 변경내역 명시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생략) ② 1. ~ 7. (생략) <신설>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 전 배부기준

* 배부기준 변경내역 명시 관련 개정안 적용대상은 회계분리기준에 규정된 배부기준 변경 및 제40조 제2항의 배부기준 변경을 포함

3. 내부거래 대상 의무 범위 및 대가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분리기준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에서는 내부거래 인식대상서비스를 전송역무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단가를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용약관을 대가로 한 내부거래를 인식하거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내부거래대상역무로 하는 내부거래를 인식하는 사

례가 발생한다.

나. 내부거래인식의 변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정당시(1996년도)에는 내부거래대상서비스를 명시하였으나, “등”이라는 문구의 해석상의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대상서비스 제한없이 내부거래를 인식하였다.

< 표 3-3 > 회계분리기준의 내부거래인식 변천

회계분리 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1996-47호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7호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호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0호
내부거래 제공서비스	시내전화, 시외전화, 공중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등	동일사업자내의 타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동일사업자내의 타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부거래 이용서비스	시외전화, 국제전화, 부가통신역무 등	동일사업내의 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동일사업내의 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 다만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내부거래 이용서비스에서 제외 - 기타 내부거래필요시 내용과 사유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 내부거래를 인식
내부거래 단가	전화망: 직전연도의 접속료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이용약관상 요금 등	상호접속기준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 접속통화요금 기타 서비스 : 이용약관상의 요금 등	상호접속기준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 접속통화요금 기타 서비스 : 이용약관상의 요금 등	당해 연도의 접속통화요금

2001년도에는 내부거래대상서비스의 제한을 없앴으며, 2005년도에는 인터넷접속역무가 기간역무화됨에 따라 인터넷접속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간에는 내부거래를 금지하였고, 내부거래필요시 내용과 사유를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2007년도에는 불공정경쟁 방지목적으로 도입된 내부거래로 인해 오히려 서비스 원가와 수익 구조를 왜곡시키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내부거래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의 범위를 공정경쟁을 활성화가 필요한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으로만 한정하였다.

자가소비사업용비용에 관해서는 2005년도에 망유지보수 비용등을 자가소비사업용비용으로 불합리하게 회계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소비사업용비용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 표 3-4 > 회계분리기준의 자가소비사업용비용 정의 관련 규정 변천

회계분리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7호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호
자가소비사업용비용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비용

다. 개선방안

내부거래란 고객에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역무 및 서비스가 다른 역무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거래는 내부거래를 인식한 역무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서비스간 상호보조여부를 감시하고 내부거래단가와 타사업자간

거래단가를 비교하여 불공정경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내부거래는 내부거래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한도에서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거래는 규제대상서비스에 대해 타사업자가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대가로 거래하도록 하여 역무간 상호보조를 방지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무분별한 내부거래로 인해 서비스별 손익에 왜곡이 발생한다면 회계정보의 유의성을 저하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내부거래 관련 조항의 2007년도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내부거래 대상서비스는 현행을 유지하여 접속통화요율을 가지는 서비스로 한정하되, 기타 내부거래의 인식이 원가·효익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필요한 경우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시 원가율에 의한 내부거래를 일부 인정했듯이 직접적인 원가배부가 어려운 경우 원가기반의 내부거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약관에 근거한 내부거래시 발생가능한 원가왜곡 및 역무간 상호보조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한편 KT의 망감시회선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소비사업용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망감시회선의 경우 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일부이므로 해당서비스로 원가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망감시회선의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내부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5> 내부거래인식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①~②(생략) <신설>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①~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요율이 없는 서비스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식할 수 있다.

4. 운영절차 개선을 위한 경영자 확인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영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가 낮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통신사업자가 방통위에 영업보고서 제출 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거짓 또는 왜곡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영자(CEO/CFO) 확인서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회계분리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경영자에게 주지시키고, 영업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6> 경영자 확인제도 관련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③(생략) <신설>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③(현행과 같음) ④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절 원가분류방법 및 배부기준의 합리적 개정

1. 공통비 배부기준의 명확화

가. 현황

직접비는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직접 할당을 하며, 공통비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게 된다.

현재 회계분리기준은 공통비 배부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능설비의 배부기준은 역무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이다. 그리고, 1순위로 정해진 배부기준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배부기준을 적용하는데, '불가능한 경우', '어려운 경우'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나. 문제점

우선순위 없이 나열된 배부기준은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가능성 상존하며, 임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다.

다. 개선방안

인과관계가 높은 배부기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되, 회계분리기준에 제시된 배부기준 중에서 전혀 적용가능성이 없는 배부기준은 삭제하여 원가배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원가정보의 비

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과관계가 높은 배부기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송운영공통비 배부기준중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 비율 또는 사용시간”은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 비율에 우선순위를 둔다.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선로운영비용 배부기준 중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에서는 사용량에 우선순위를 둔다. 정보처리운영공통비 및 정보처리기능설비 배부기준중에서 “대역폭”에 우선순위를 둔다.

배부기준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 및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은 검증부서에서 수행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계분리기준상 제시되어 있으나 전혀 적용가능성이 없는 배부기준은 삭제하도록 한다. 교환운영공통비 배부기준중 “기집계 교환비용 비율”은 삭제하고, 교환운영공통비는 교환기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우선 적용하고, 비용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에 의해 배부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배부하므로 기집계 교환비용 비율은 적용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교환기능설비 배부기준중 “교환기 수용가입자수 비율”은 삭제하고, 교환기능설비도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우선 적용한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하므로 “교환기 수용가입자수 비율”은 적용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 ‘어려운 경우’ 등의 문구를 ‘불가능한 경우’로 통일한다.

라.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7> 공통비 배부기준 명확화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3조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p> <p>①교환운영공통비는 교환기사용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p> <p>1.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 비용의 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p> <p>2.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비율: 비용의 발생이 설비가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p> <p>3. 기집계된 교환비용 비율: 비용의 발생이 역무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p> <p>② 전송운영 공통비는 T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p>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p> <p>2.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 또는 사용시간 : 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p> <p>3. 광동축 혼합망의 -중략-</p> <p>4.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p>	<p>제23조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p> <p>①교환운영공통비는 교환기사용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하되, 다만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p> <p>3. 삭제</p> <p>② -----(삭제)</p> <p>-----</p> <p>-----</p> <p>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p> <p>2. <삭제></p> <p>2..</p> <p>3.-----</p> <p>-----</p> <p>-----</p> <p>-----T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순으로</p>

<p>③선로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중략~</p>	<p>-----</p>
<p>5. 인터넷 기반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p>	<p>5. 인터넷 기반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p>
<p>⑤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p>⑤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p>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중략~</p>	<p>제31조</p>
<p>1. 교환기능설비: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교환기 수용가입자수비율</p>	<p>1. 교환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p>
<p>2. 전송기능설비: 제23조제2항의 기준을 따르되, 전송기능설비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p>	
<p>~중략~</p> <p>5. 정보처리기능설비: 역무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비율</p>	<p>5. 정보처리기능설비: 역무별 대역폭,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비율</p>

2. 전송 및 중계선로 운영공통비 역무별 배부기준 개선

가. 현황

회계분리기준 제23조 및 제31조의 역무별 배부에서는 전송 및 중계선로원가의 역무별 배부기준으로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문제점

현행 전송 및 중계선로 운영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인 속도환산회선 배부기준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아 역무별 원가배부 왜곡가능성 높다.

다. 개선방안

운영비용은 속도환산 회선수와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행 E1급 환산회선수 적용시의 원가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계구간의 전송 운영공통비 및 선로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수정한다. 여기서,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이란 직접 할당한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과 공통설비를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에 의해 배부한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의 합을 의미한다.

운영비용은 주로 해당 설비의 운영,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운영공통비는 관련 설비의 역무별 취득가액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배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적 특성에 맞추어 자산은 감가상각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하고, 비용은 취득가액과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취득가액 비율'로 배부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통 전송기능설비 및 선로기능설비의 배부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적용한다.

전송기능설비의 경우 전송장비 구성모듈별로 직접 서비스구분이 가능한 부분은 서비스별로 직접 할당하고, 구성모듈별로 직접 서비스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부분은 모두 E1환산 회선수에 의해 배부한다. E1기준 환산회선수가 사용량을 의미하며, 과거 전송속도와 원가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속도환산회선 배부기준이 현재의 통신기술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선로기능설비의 경우에도 가장 바람직한 인과관계는 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케이블의 서비스별 단면적 비율일 것이나, 이를 서비스별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1환산 회선수에 의한 배부가 타당하다.

라.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8 > 전송 및 선로운영비 배부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1. ~ 2. (생략) 3. <u>기집계된 교환비용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역무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u>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 <u>전송운영 공통비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u>	②------(삭제) -----.

<p>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p> <p>2.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 또는 사용시간 : 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p> <p>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p> <p>4.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u>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u></p> <p>③ (생략)</p> <p>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E1급을 1 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T1급 산출한 운용회선수</p> <p>2. ~ 4. (생략)</p> <p>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u>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u></p> <p>④ (생략)</p> <p>⑤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u>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역무별</u>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p>⑥ (생략)</p>	<p>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p> <p>2. <삭제></p> <p>2.-----</p> <p>-----</p> <p>-----</p> <p>3.-----</p> <p>-----</p> <p>-----</p> <p>-----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p> <p>③ (현행과 같음)</p> <p>1. -----공통 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p> <p>2. ~ 4. (현행과 같음)</p> <p>5.-----</p> <p>-----, 대역폭 비율 순으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p> <p>⑥ (현행과 같음)</p>
---	---

<p>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역무별로 할당이 곤란하여 공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전기통신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p>1. 교환기능설비: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교환기 수용가입자수비율</p> <p>2. 전송기능설비: 제2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전송기능설비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p> <p><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3. 선로기능설비: 제23조제3항의 기준에 따르며,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p> <p><신설> <신설></p>	<p>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삭제></p> <p>①-----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 (삭제)-----기준-----불가능한 ----- (삭제)----- 을 적용한다.</p> <p>②-----의 역무별 배부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p> <p>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p> <p>2. 사용시간,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회선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p> <p>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p> <p>4.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서비스별 사용량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역폭 비율로 배부</p> <p>③-----의 역무별 배부는 다음 각 호의 -----을 적용한다.</p> <p>1.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1급 산출한 운용회선수</p> <p>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 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p>
--	---

	<p>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p>
<p><신설></p>	<p>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p>
<p><신설></p>	<p>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p>
<p><신설></p>	<p>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순으로 배부</p>
<p>4. 단말기능설비: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p>	<p>④-----의 역무별 배부는 직접-----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p>5. 정보처리기능설비: 역무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p>	<p>⑤-----는-----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비율을 배부 기준으로 한다.</p>
<p>6. 전원기능설비: 공통자산 배부후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p>	<p>⑥-----는-----제1항·제2항 및 제5항-----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3.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배부기준 개선

가. 현황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공통비 배부기준은 역무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이다.

나. 문제점

결합판매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의 비율이 적을 경우 직접비 비율로 배부하는 것은 원가 왜곡의 우려가 있다.

다. 개선방안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인과관계를 반영하여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비율로 수정하여 공통비를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촉진비 자체가 신규가입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므로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을 기준으로 공통비를 배부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라.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9>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배부기준개선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1. (생략)	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1. (현행과 같음)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 역무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	2. -----역무별 신규 가입자 요금수익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대리점 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할당

가. 현황 및 문제점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은 직접 역무로 할당하고 있으며 직접 할당이 가능한 원가는 직접 할당하는 것이 원가분류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결합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단지 업무의 편의성 차원에서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을 공통역무로 분류를 한다면 원가왜곡이 심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나. 개선방안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은 직접 역무로 할당하도록 고시 규정에 명시하여 서비스별 원가의 정확성을 높인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판매촉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합판매 활성화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비스별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대리점수수료를 역무별로 직접 할당하여 전표를 발생시키는 것이 공통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결합서비스 관련 비용은 직접비라고 하더라도 일단 “결합판매 서비스공통”으로 분류한 후 직접 할당하도록 하여 결합서비스관련 비용의 전체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열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말기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별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 별지서식(안 별지 10-2호)은 부록에 제시하도록 한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0> 단말기보조금 및 대리점수수료 직접할당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 ② (생략) <신설>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 및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배부가 필요한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의 기준을 적용

5. 콜센터 원가 분류 기준 개선

가. 현황

콜센터의 원가는 가입자관리비용에 포함하여 가입자수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나. 문제점

가입자 관리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가입자관리비용 중 콜센터의 경우 현재의 배부기준인 가입자수보다는 상담건수가 인과관계가 높다.

배부) (생략) 1. 가입자관리비용:역무별 가입자수비율 <단서신설> 2. ~ 3.(생략)	배부) (현행과 같음) 1.-----단, 콜 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2. ~ 3. (현행과 같음)
--	---

6.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분리기준에는 반기초 업무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량이 적은 부수업무(사내 판매 등)의 경우 업무량 반영이 어렵다.

나. 개선방안

반기초 업무분석을 도입하고, 시간투입비중을 1/100단위로 표시하도록 한다. 원가배부기준으로서의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인건비 분류 기준의 세분화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업무량 반영이 어려운 부수업무(사내 판매 등)에 대한 분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미 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은 반기초 업무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2>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관련 개정안

현행	개선안
<p>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u>반기초</u>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u>반기중에</u>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반기초</u>----- ----- -----<u>반기중에</u>----- -----</p> <p>③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제 3 절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

1.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 근거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분리기준 제42조(보고서의 제출)에서는 합병시 합병, 피합병법인의 영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개선방안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통신사업자간 합병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합병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해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한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가 필요하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3>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③(생략) <신설>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③(현행과 같음) ⑤ 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시 영업권 인식 근거 마련

가. 현황

회계규정 제12조(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분류)에서는 영업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문제점

합병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영업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 규제사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시 영업권 처리부분을 2002회계연도 검증시 일부인정한 사례가 있다. 통신위원회는 2002회계연도 SK텔레콤 영업보고서 검증시 신세기통신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을 이동전화역무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계상하도록 하였다. 이동전화역무와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인 “채널 고객가치”를 산정하여 이것만을 이동전화역무 영업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 개선방안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도

3. 결합판매 수익 배부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분리기준 제12조에 의하면 결합상품 판매시 이용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개별상품의 수익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부한다.

결합상품 판매시 이용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개별상품의 수익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부하여 인가역무(시내전화)의 수익을 실제보다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나. 개선방안

결합판매 수익 배부시 할인율 및 할인금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고 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 포함)를 받은 경우 심사결과 할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5> 결합판매 수익 배부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u>약관에</u> 명시	제12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 ----- ----- ----- <u>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u>

<p>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로 배부한다.</p>	<p>이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p>
<p><신설></p>	<p>1. <u>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u></p>
<p><신설></p>	<p>2. <u>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u></p>

4.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비용발생이 다수의 서비스에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결합판매에 따른 공통비의 배부기준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통비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의 공통으로 분류하고 배부하여 원가산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 개선방안

결합판매에 해당하는 공통역무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사전체공통역무로 분류하여 인과관계가 없는 역무로 배부하는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되,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에 대해서만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을 분류한다. 인원업무분장의 경우 인건비의 기능/역무 분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판매영업 및 고객서비스기능에 대해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이 필요하다.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의 배부기준은 역무별 배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하되, 결합판매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결합판매서비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결합판매서비스에 해당하는 세부역무별 결합 판매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으로 배부한다.

이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 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배부를 통해 정확한 서비스별 원가산정을 도모하고, 결합판매서비스관련 비용의 규모를 파악하여 결합판매관련 규제정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6>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 ② (생략) <신설>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u>

5.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삭제

가. 현황 및 문제점

과거 무선호출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규정인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를 적용하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개선방안

지역별 회계분리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역무의 경우 전국사업자는 지역별로 자산·비용을 분리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회계분리는 적용대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를 삭제한다. 현실성 없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률해석상 오해를 줄이고 실무적용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기준의 현행화를 유도한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7> 지역별 회계분리 삭제안

현행	개선안
<p>제37조(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비용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p>1. 교환운영비용 : 지역별 교환시설수 또는 가입자수</p> <p>2. 전송운영비용 : 지역별 전송시설수 또는 가입자수</p> <p>3. 단말운영비용 : 관련 가입자수</p> <p>4. 전원운영비용 : 전원설비의 취득가액 비율</p> <p>5. 판매영업비 : 가입자수</p> <p>6. 관리비 : 기집계비용 비율</p> <p>7. 접속료 : 매출액 비율</p> <p>8. 설비사용료 : 직접분류 또는 가입자수 비율</p> <p>9.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분류와 동일한 기준</p>	<삭제>

<p>제38조(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외비용등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p>	
<p>제39조(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유형자산등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유형 자산 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단, 전원설비는 전원설비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p>	

6. 투자보수율 산정관련 단서조항 삭제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분리기준 제36조에서는 투자보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 관행적으로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이 요금, 원가 및 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의해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개선방안

통신회계정보의 근간인 회계분리기준에 의해 투자보수율이 산정되도록 제36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투자보수율을 정하도록 한다.

회계분리기준이 요금 및 모든 원가 및 대가 산정(접속료, USF분담금,

설비제공대가 등)의 기준이 되는 고시이므로 회계분리기준에 의해 투자보수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각종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

결합 및 융합환경하에서 상대적으로 회계분리기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투자보수율을 결정하는 것보다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투자보수율을 결정하여 회계분리기준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환경을 고려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단, 매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지는 방통위의 정책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문화는 하지 않으나, 최근의 시장 및 경쟁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매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규제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보수율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고시들은 각 대가 산정 및 해당 고시 개정시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한다.

다.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표 3-18> 투자보수율 산정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6조(투자보수)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에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제36조(투자보수)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7. 별지서식 보완

별지서식 보완은 경영자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 및 결합판매 관련 별지서식 보완, 유형자산 등에 대한 형태/기능, 형태/역무에 대한 서식 추가, 배부기준 변경효과 관련 별지서식 보완 등이 있다. 세부내용은 부록에 제시한다. 특히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열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말기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별지서식(제10-2호)에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 별지서식은 상반기 종료후 보고자료에 포함하도록 한다.

<표 3-19> 통계의 보고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7조(통계의 보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후 7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만 보고할 수 있다.	제47조(통계의 보고)----- ----- ----- ----- ----- -----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1. ~ 3. (현행과 같음)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통계(별지 제3호 서식)	
4. 역무별 손익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4. ---- 영업수익 명세서 -----
<신설>	5.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센터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명세서(별지 제10-2호 서식)

제 4 장 중장기 추진사항, 검증사항 및 현행유지사항

제 4 장 중장기 추진사항, 검증사항 및 현행유지사항

제 1 절 중장기 추진사항

1. 회계정리위반 처벌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및 제78조(과태료)에 근거하여 회계정리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비해 제재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회계분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과태료 업체당 1천만원 이하 및 시정명령)이 낮아 위반사태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표4-1 > 최근 5년간 회계분리 위반건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검증사업자수	7개사	12개사	15개사	21개사	17개사
회계분리위반건수	36건	84건	132건	274건	340건

※ 과태료 수준 상향(1천만원→3천만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계류중

나. 개선방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회계정리)에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회계분리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정리를 한 경우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한다.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자별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기존의 과태료 금액보다 큰 규모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무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법 제78조) 중 “회계정리 위반”은 삭제하도록 한다.

이로써 역무별 상호보조, 접속요율 또는 보편손실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리의 경우 엄중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회계정리)①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회계정리)①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②~⑥ (생략)
<신설>	⑦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은 제64조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78조(과태료)①(중략)	제78조(과태료)①(중략)
8.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투자보수율 산정대상 및 산정방식

가. 2008/2009회계연도 투자보수율

1)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6월 KT-KTF합병에 의해 새로운 통신환경에 접하게 되므로 2009회계연도에 적용할 2009회계연도 투자보수율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KT-KTF합병으로 인하여 KT는 유선사업과 무선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신사업자가 되어 유선대표사업자의 투자보수율 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 개선방안

2008/2009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투자보수율은 규제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방통위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투자보수율을 적용('09. 1 방통위 발표: 세전투자보수율 KT 10.26%, SKT 13.6%)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회계연도의 KT투자보수율의 경우 자산을 분할하여 유선KT와 무선KT(구KTF)에 각각의 투자보수율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나. 투자보수율 산정대상

1) 현황 및 문제점

유선사업자는 KT, 무선사업자는 SKT의 투자보수율 대표적으로 산정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중이다. 합병과 통신환경 변화등으로 인해 현행 대표투자보수율 체계의 유지는 바람직한 규제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특히 KT-KTF합병과 SKT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인수등으로 인해 KT의 유선사업자 대표투자보수율과 SKT의 이동사업자 대표투

자보수율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2) 검토의견

역무별 투자보수율은 산출하기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정책적 결정이 수반되면 산출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별 투자보수율 산정이 바람직하다. 코스닥 상장기업이나 코스피 상장이 오래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합리적인 베타산정이 불가능한 면이 있으나, 적절한 베타수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은 전체적으로 산정 체계가 과거지향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을 가짐에 따라 효율성 달성의 유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개별 사업자의 자본구조, 자금조달방식 등에 따라 투자보수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타인자본비용은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려는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금조달상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투자보수율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투자보수율보다 높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자본구성비율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구성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규제목적이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 검토의견

합병과 통신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현행 대표투자보수율 체계의 유지로는 바람직한 규제목적 달성을 달성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보수율 산정대상(역무별 또는 사업자별 투보율 등) 및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기준 검토

가. 회계분리 현황

음성과 데이터는 영업보고서상 회계분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02년부터 접속원가 산정시 원가분리를 실시하고 있다. 회계분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서비스 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암묵적인 상호보조를 유인한 것으로 보이며, 음성전화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고도화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통사업자가 별도 허가없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주(정통부 유권해석 '03. 11)하였다.

나. 과거 관련 이슈

1999년 10월 통신위원회는 통신위원회는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관련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이통5사에(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음성/데이터 간 회계분리를 명령하였다.

하지만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서비스가 이동전화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되며, 회계분리기준에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후에도 회계분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통신위가 심결한 이통사의 범위반내용 (제52차 통신위, '99. 10)』
피신고인이 제공하는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원가 구성요소는 망연동장치(IWF) 뿐만 아니라 교환, 전송, 선로설비등의 장비와 관련된 운영비용과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판매 및 영업비용등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추가되는 장비인 망연동장치(IWF)와 관련된 원가만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하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03년 11월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통사의 무선데이터서비스가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의 역무 침해라는 문제 제기였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다. 접속원가 산정시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회계분리는 수익과 비용, 자산의 서비스별 분리를 의미하며, 원가분리는 비용 및 자산의 분리만 해당하고 수익의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음성/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와 망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리는 정책적 목적이 상이하다. 데이터서비스 원가분리는 '02년도 접속료 산정('02~'03년분)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구(전송설비 이용정도) 등을 감

안하여 배부비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CDMA2000-1X는 '02년~'03년은 음성과 데이터비율을 8:2로, '04년 이후에는 9:1로 반영하도록 결정하였고, IS95-A/B는 모두 음성 접속원가에 포함하고, EVDO는 모두 데이터 원가로 분류하여 접속원가에서 제외하였다. '06~'07년, '08~'09년도 접속원가 산정시에는 3G의 음성데이터 원가배부비율을 9:1로 적용하였다.

라. 해외사례 및 기타

이동전화의 경우 요금규제 사례가 거의 없어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소매규제는 없으며, 미국은 요금표 제출의무, 영국은 약관공시의무만 존재하고, 호주의 경우 이동전화요금 가격상한제가 2002년에 폐지되고 요금신고의무만 있다.

마. 현 시점에서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검토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를 위해서는 원가동인에 의한 데이터 요금규제 정책의 시행과 데이터서비스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여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데이터 서비스 요금은 원가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인가 또는 신고로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데이터서비스가 음성서비스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크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활성화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신사업자들도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써 데이터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투자 역시 데이터서비스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된다.

< 표4-3 > 이통3사별 트래픽 기준 비교표('08년 기준)

통신사명	음성	데이터
KT(F)	90.6%	9.4%
SKT	99.1%	0.1%
LGT	96.7%	3.3%

※ 사별 음성과 데이터를 배부하는 기준은 다름

따라서 현재 음성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는 요금규제 등의 규제정책이 데이터서비스가 중심 서비스로 변화될 경우 데이터서비스 요금과 음성서비스 요금의 별도 규제를 위해 회계분리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규제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자의 입장에서든 원가뿐만 아니라 수익 및 자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필요한 회계정보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수익의 분리도 필요하다.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회계분리 배부기준설정의 어려움과 망이용대가 및 상호접속료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는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수익배부가 어려우며, 수익 배부방식에 따라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의 편차가 심하게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 중 배부가 어려운 기본료, 가입비, 정액요금 등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정액요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공통비용의 경우에도 수익의 배부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시 낮은 망원가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자의 경우 망이용 대가 수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활성화가 안 된 시점에서 인과 관계에 따른 공통비 배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음성/데이터 공통원가가 현재 배부기준(접속원가 산정)인 9:1보다 데이터서비스로 적게 배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망에 대한 공통원가 배부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음성망에 대한 배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4.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분리기준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2011년에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통신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100여개국이 도입 또는 허용한 상태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회계기준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한 회계정보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도입이 이미 결정되었다.

나. 검토의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통신사업자의 회계시스템과 통신회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에도 여전히 일반 재무목적의 회계시스템과 규제목적의 회계시스템을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정보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에 관하여만 제도개선사항도

출이 필요한지 아니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규제회계에서도 그동안 적용해오던 일반목적의 회계기준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한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자산재평가, 영업권상각 등 통신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표4-4 > K-IFRS도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고려사항

구분	현행 K-GAAP	K-IFRS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고려사항
재무제표 작성자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개별재무제표 작성 원칙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 작성 원칙이며 개별재무제표 작성의무 없음	○ 개별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다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정형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에 대해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영업손익의 표시가 선택사항임)	○ 자산 및 수익과 비용항목에 대한 정형화된 형식을 제시하지 않아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 -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구분이 없어지므로 이를 고려 • 요금원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계정화 고려 • 통신회계를 위한 원가산정시스템 별도 구축 의무화 고려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원가모형만 인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는 모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필요성 결정 필요 - 둘 다 필요로 하는지, 원가모형만 필요로 하는지, 원가모형을 원칙으로 하고 재평가모형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면 재평가모형에 대한 정보도 규제 목적으로 요구할 것인지 결정

			-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여부
영업권 상각 중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 영업권을 내용 연수에 걸쳐 정 액법으로 상각 -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 지 못함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여 부를 평가하거나 손 상을 나타내는 징후 가 발생하는 경우 연 1회이상 손상평 가 수행	○ 손상평가가 어려워 상각을 회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가 있음 -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액의 원가인정 여부결정 - 영업권 강제상각 - 나아가 일반지원자산 및 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규정
비상장 기업	별도규정없음	비상장기업에는 K-IFRS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료 도 동일하게 인정할 지 여부 ○ 비상장기업에 대한 영업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 안도 고려가능

제 2 절 검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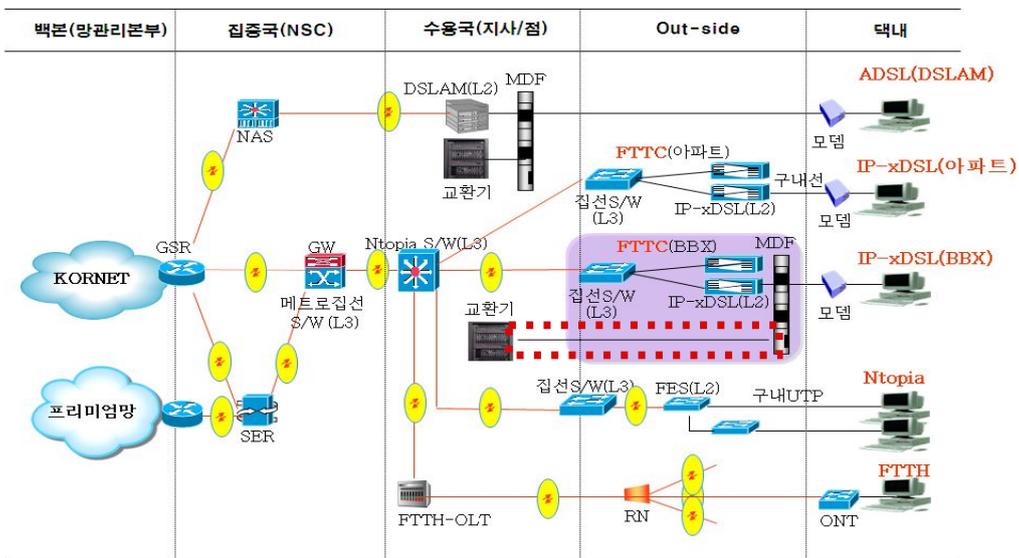
1. IP-xDSL(BBX) 방식의 가입자선로 분류

가.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분리기준 제23조 및 제31조의 역무별 배부에서는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운영공통비 및 공통자산이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회선수를 산정한다.

IP-xDSL(BBX)방식의 경우 실제로 초고속인터넷이 점유하지 않은 망(그림의 점선 표시 부분)의 원가까지 초고속인터넷으로 배부하게 되어 원가왜곡이 발생한다.

[그림4-1] 초고속 인터넷 망구성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가입자선로 부분은 전진 배치된 MDF에서 가입자모뎀까지의 구간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전체 가입자선로 구간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동일 비중으로 배부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은 점유하지도 않은 망의 원가를 배부 받게 되어 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검토결과

이 사항은 회계분리기준 개정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며 검증부서와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가입자선로 구간 공통비는 동 구간을 점유하는 서비스의 실제 점유거리를 가중하여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사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로의 경우 공사비용은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거리개념이 중요한 원가동인이기 때문이다.

현행 회계분리기준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IP-xDSL (BBX)방식에서 실제로 초고속인터넷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망의 원가까지 초고속인터넷으로 배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2. 가입자선로에 대한 미사용자산 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미사용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산을 미사용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에 대한 미사용자산 분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사용하지 않거나 철거함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으로 남아 있어 공통선로원가를 배부받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나. 검토결과

회계규정에 따라 미사용기간이 2년을 넘은 유형자산은 미사용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며 이의 위반여부는 검증사항에 해당한다. 검증시에는 자산대장의 개별 자산별로 미사용자산을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자실선 1pair 단위로 미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유율을 고려해서 실제 사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장비를 운영하는 교환이나, 전송설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제 3 절 현행유지사항

1. 검증프로세스 강화

전년도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배부기준 및 원가기초 자료를 적시에 검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규제효율성 측면에서 1년 단위의 검증이 바람직하다.

업무분장의 세분화 등을 통해 배부기준의 적시성 충족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비용·효익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다만, 검증회계법인을 연초에 선정해서 시간적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고려가능하다.

또한, 이슈발생시 회계전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로 발생하는 회계분리 이슈 해결과 회계규정관련 유권해석 등을 위한 회계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적시성 있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계전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정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전문위원회 운영부서에서는 회계전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유권해석권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의과정 및 관련자료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유차원에서 바람직하다.

2. 광고선전비의 공통비 배부기준

광고선전비의 공통비 배부기준은 역무별 요금수익이 바람직하므로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 광고선전의 기본목적이 신규가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탈,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거시적인 목적이 존재하므로 신규가입자

수 또는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선전비가 가입자 유지 및 신규확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현행기준인 역무별 요금수익이 광고선전비의 공통비 배부기준으로 적정하다. 일반적으로 역무별 요금수익은 최선의 배부기준은 아니지만 인과관계과약이 곤란한 경우 차선으로 이용가능하며, 인과관계기준이 불명확할 때 차선으로 부담능력기준의 배부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3. 회계분리절차 개선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자산등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형태별·기능별 분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를 형태별·기능별 분류 이전에 수행한다면 기능별/역무별 배부시 발생하는 공통원가를 배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

회계분리기준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에서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를 형태별·기능별 분류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정분류체계이므로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도 전기통신사업회계의 형태별 분류가 가능하다. 회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분류체계이지만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과의 공통비 배부를 위해서는 기능분류를 따라야 공통비 배부가 가능하며, 기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회계분리기준 제20조에 의거 별도의 분류체계와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배부하면 된다.

4. 회계분리 대상사업자 범위 개선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사업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필요성이 있으나, 타 정책과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계분리기준 제42조(보고서의 제출)에서는 사업자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타서비스 회계분리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중장기적으로 회계분리기준의 통합이 바람직하나 산업의 개별특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사업자가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을 동시에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수이고 앞으로는 더욱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상이한 다수의 회계분리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분류기준 및 배부기준 등의 단일화보다는 특성을 반영한 단일화가 필요하다.

6. 피합병회사의 유형자산 가액 계상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회사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한다. 회계분리기준 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에서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회사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상 역사적원가에 근거한 투자보수율 규제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회사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한 것

은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합병회사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자산시스템을 각각 운영할 경우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정정도의 규제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7. 영업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계분리기준 제8조(감가상각방법)에 규정에 의거 영업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세법상의 내용연수를 준용하고 있으며 사업자간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한다.

과거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주)의 2002 회계년도 영업보고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무형자산상각비 산정시 내용연수로 20년을 적용한 것에 대해 10년으로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위의 결정은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이 합병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10년으로 파악하고 주파수가치를 산정한 것을 감안하여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사안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현행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지원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차원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 합병법인은 청산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분이 요금원가 및 접속원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세의 납부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될 것이며 별도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 합병법인이 청산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분이 요금원가 및 접속원가로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

제 5 장 결 론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회계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KT·KTF 합병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의 합리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기통신회계분리기준을 포함한 회계규정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자간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자간 합병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비용 배부를 통한 원가왜곡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시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 및 피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합병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결합판매와 관련된 배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서비스 융합 등에 따른 서비스별 수익 및 원가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판매에 따른 공통수익은 요금적정성 심사시 적용한 할인율을 기준으로, 공통마케팅 비용은 결합판매 공통역무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 절차, 방법 등을 기술한 회계분리지침서를 상호 공유하여 영업보고서 작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회계분리지침서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 및 보고 의무를 통신사업자 경영자에게 주지시키고 영업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영업보고서에 부당한 내부보조 행위 등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경영자확인문서 및 서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및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열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시장경쟁

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별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회계제도 정비,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 회계정리위반에 따른 처벌강화 등 중장기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은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통합 등 본격적인 융합현상과 결합판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더욱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원가정보는 기업의 의사결정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요금정보 및 각종 규제정책에 필요한 정보 산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2008. 2. 29
- [2]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08. 10. 1
- [3]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2008. 2. 29
- [4]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2008. 5. 19
- [5] 함창용 외 3인,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2
- [6] 함창용 외, “역무통합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 [7] www.fcc.gov
- [8] www.btplc.com
- [9] www.soumu.go.jp
- [10] Directive 2002/19/EC, Article 9(Obligation of transparency), Article 11(Obligation of accounting separation), Article 13(Price control and cost accounting obligations)
- [11] Directive 2002/22/EC, Article 17(Regulatory controls on retail services)
- [12] Ofcom,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Final statement and notification-Accounting separation and cost accounting: Final statement and notification”, 2004.7.22

부 록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요율이 없는 서비스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식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결합판매 심사(심사 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

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제17조제1항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입자관리비용: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다만, 콜센터(가입자와의 전화응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비용은 별도 구분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④제17조제1항제9호와 제10호 중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 및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를 삭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송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 :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3.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제23조제3항제1호와 제5호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공통 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⑤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

역폭을 배부 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 : 역무별 가입자수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제31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신설한다.

①교환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

②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

2. 사용시간, 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 회선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서비스별 사용량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역폭 비율로 배부

제31조제3호에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부터 제5호를 신설한다.

③선로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1급 산출한 운용회선수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순으로 배부

④단말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배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정보처리기능설비는 역무별 대역폭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⑥전원기능설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제4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

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 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 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 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 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 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

4.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5.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 별 분류 명세서 (별지 제10-2호 서식)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5-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부가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판매영업기능비용														
(1) 광고선전비														
(2) 판매촉진비														
(3)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비용														
소계														
고객서비스기능비용														
(1)가입자관리비용														
(2)마일리지·멤버쉽관리비용														
(3)청구수납비용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2. 배부기준은 결합판매서비스만의 배부기준에 한한다. 예를 들어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인 역무별 요금수익은 결합판매로 인한 개별 서비스의 결합판매 요금수익을 의미한다.

별지 제10-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의 형태별 영업비용 역무별 분류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계 정 과 목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부가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 서비스	소계		
1. 인건비 (1) 급여 (2) ... (3) ... 소계													
2. 경비 (1) 복리후생비 (2) ... (3) ...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0-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세부계정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부가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 서비스	소계		
판매 영업 기능 비용	I.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1.신규모집수수료													
		2...													
		3...													
		소계													
	II.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비용	1...													
		2...													
		3...													
소계															
계															
고객 서비스 기능 비용	I.가입자관리비용	1.업무취급수수료													
		2. ...													
		소계													
	II.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1...													
		2...													
		소계													
	III.청구수납비용	1...													
2...															
소계															
계															
합계															

■ 작성지침

1. 세부계정은 재무회계상 가장 세분화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역무별로 직접 할당되는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작성한다.
2. 각 기능별로 공통비 배부금액이 있거나 금액이 미미할 경우 세부계정을 '기타'로 구분한다.
3. 세부계정에 대한 해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4-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역무별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5-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6-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 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7-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업통계 명세서(배부기준 변경전)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부가통신역무	합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I. 영업수익														
II. 총괄원가														
(1) 영업비용														
(2) 영업외손익														
(3) 투자보수														
(가) 요금기저														
- 연평균 유형자산														
- 연평균 무형자산														
- 연평균 임차보증금														
- 연평균 채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나) 투자보수율														

별지 제17-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업통계 명세서(배부기준 변경효과)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부가통신역무	합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I. 영업수익														
II. 총괄원가														
(1) 영업비용														
(2) 영업외손익														
(3) 투자보수														
(가) 요금기저														
- 연평균 유형자산														
- 연평균 무형자산														
- 연평균 임차보증금														
- 연평균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나) 투자보수율														

별지 제1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지>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주식회사 0000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 000은
본 영업보고서가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짓 또는 왜곡 없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주식회사 0000 담당이사 000 (서 명)

대표이사 000 (서 명)

제17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1. ~ 9. (생략)

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단서신설>

제22조(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① 1. ~ 2. (생략)

3. 기집계된 교환비용 비율 : 비용의 발생이 역무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② 전송운영 공통비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 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

제17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

<p>2.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비율 또는 사용시간 : 회선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p> <p>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p> <p>4.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p> <p>③ (생략)</p> <p>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 :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T1급 산출한 운용회선수</p> <p>2. ~ 4. (생략)</p> <p>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로 배부</p> <p>④ (생략)</p> <p>⑤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p>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p> <p>2. <삭제></p> <p>2.----- ----- ----- -----.</p> <p>3.----- -----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p> <p>③ (현행과 같음)</p> <p>1. -----공통 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대역폭 비율 순으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p>
---	---

<p>⑥ (생략)</p> <p>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1. (생략)</p> <p>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 역무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p> <p>3. (생략)</p> <p>제26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생략)</p> <p>1. 가입자관리비용:역무별 가입자수비율 <단서신설></p> <p>2. ~ 3.(생략)</p> <p>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역무별로 할당이 곤란하여 공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전기통신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p>1. 교환기능설비: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교환기 수용 가입자수비율</p> <p>2. 전송기능설비: 제2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전송기능설비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5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1. (현행과 같음)</p> <p>2.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p> <p>3.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현행과 같음)</p> <p>1.-----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삭제></p> <p>①-----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삭제)-----기준-----불가능한------(삭제)-----을 적용한다.</p> <p>②-----의 역무별 배부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p> <p>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p> <p>2. 사용시간, 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 : 회선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p> <p>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p>
---	--

<p><신설></p> <p>3. <u>선로기능설비: 제23조제3항의 기준에 따르며,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u></p>	<p>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p> <p>4.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서비스별 사용량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역폭 비율로 배부</p> <p>③-----의 역무별 배부는 다음 각 호의 -----을 적용한다.</p>
<p><신설></p>	<p>1.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1급 산출한 운용회선수</p>
<p><신설></p>	<p>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p>
<p><신설></p>	<p>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p>
<p><신설></p>	<p>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 : 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p>

<p><신설></p> <p>4. 단말기능설비: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p> <p>5. 정보처리기능설비: ①역무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p> <p>6. 전원기능설비: 공통자산 배부후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p> <p>제36조(투자보수)① ~ ② (생략) ③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에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p> <p>1. ~ 3. (생략)</p> <p>제37조(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비용은 해당</p>	<p>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p> <p>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순으로 배부</p> <p>④-----의 역무별 배부는 직접-----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p>⑤-----는-----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 -----비율을 배부 기준으로 한다.</p> <p>⑥-----는----- ----- 제1항·제2항 및 제5항-----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p> <p>제36조(투자보수)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삭제></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7조 <삭제></p>
---	--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운영비용 : 지역별 교환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2. 전송운영비용 : 지역별 전송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3. 단말운영비용 : 관련 가입자수

4. 전원운영비용 : 전원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5. 판매영업비 : 가입자수

6. 관리비 : 기집계비용 비율

7. 접속료 : 매출액 비율

8. 설비사용료 : 직접분류 또는 가입자수 비율

9.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분류와 동일한 기준

제38조(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외비용등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9조(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유형자산등은 해당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유형자산 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단, 전원설비는 전원설비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생략)

② 1. ~ 7. (생략)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1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p><신설></p> <p>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③(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생략)</p> <p>②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u>반기초</u>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u>반기중에</u>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7조(통계의 보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후 7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만 보고할 수 있다.</p> <p>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p>	<p>8. <u>배부기준 변경시</u> <u>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u></p> <p>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u>와 <u>영업보고서 담당 이사의 확인·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⑤ <u>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 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45조(회계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u>반기초</u>----- ----- ----- -----<u>반기중에</u>----- ----- -----</p> <p>③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47조(통계의 보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	--

-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 3. 영업통계 (별지 제3호 서식)
- 4. 역무별 손익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신설>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별지 제5-1호 서식) 결합판매 직접비 배부 명세서

구 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하는 수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신용 역무	합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1) 광고선전비											
(2) 판매촉진비											
...											
...											
...											
합 계											

4. ----- 영업수익 명세서-----

5.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
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 (별지 제10-2호 서식)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삭제)-

-----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5-1호 서식) 결합판매서비스
공동 배부 명세서

구 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하는 수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신용 역무	합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판매영업기능비용 (1) 광고선전비 (2) 판매촉진비 (3) 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비용 소 계											
고객서비스기능비용 (1) 가입자관리비용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 (3) 청구수납비용 소 계											
합 계											

■ 작성지침

1. 결합판매서비스공동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2. 배부기준은 결합판매서비스만의 배부기준에 한한다. 예를 들어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인 역무별 요금수익은 결합판매로 인한 개별 서비스의 결합판매 요금수익을 의미한다.

<신설>

(별지 제10-1호 서식) 결합판매서비스
공통의 형태별 영업비용 역무별 분류
명세서

회사명 : (단위:원)

구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1. 인건비											
(1) 급여											
(2) ...											
소 계											
2. 경비											
(1) 복리후생비											
(2) ...											
소 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별지 제10-2호 서식) 판매영업기능비
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계
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

회사명 : (단위:원)

구분	세부 계정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판매 영업 기능 비용	I. 광고선전 비의외의 매출진비	...										
	II. 통신단말 장치구입 비용	...										
	계											
고객 서비스 기능 비용	I. 가입자 관리비용	...										
	II.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										
	III. 청구수납 비용	...										
합 계												

■ 작성지침

- 세부계정은 재무회계상 가장 세분화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역무별로 직접 할당되는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작성한다.
- 각 기능별로 공통비 배부금액이 있거나 금액이 미미할 경우 세부계정을 '기타'로 구분한다.
- 세부계정에 대한 해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신설>

**(별지 제14-1호 서식)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기능별 명세서**

회사명 : (단위 : 원)

구분	설비명	전기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등		무형자산		합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4-2호 서식)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역무별 명세서**

회사명 : (단위: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스	...	계	() 서비스	...	계	() 서비스	...	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 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 자산 소 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 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 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신설>

(별지 제15-1호 서식) 유형자산 등의
형태/기능별 취득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 원)

구분	설비명	전기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등		무형자산		합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별지 제15-2호 서식)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 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 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 자산 소 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 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별지 제16-1호 서식) 유형자산 등의
형태/기능별 장부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설비명	전기통신설비		일반지원자산등		무형자산		합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자산 소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별지 제16-2호 서식)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회사명 : (단위:원)

구분	설비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전기 통신 설비	(1) 교환설비 (2) 전송설비 (3) 선로설비 (4) 단말설비 (5) 정보처리설비 (6) 전원설비 소 계											
일반 지원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선박 (5) 차량운반구 (6) 기타일반지원 자산 소 계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주파수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기타무형자산 소 계											
합 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별지 제17-1호 서식) 영업통계 명세서
(배부기준 변경전)**

회사명 : (단위:원)

구 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I. 영업수익											
II. 총괄원가											
(1) 영업비용											
(2) 영업외수익											
(3) 투자보수											
(가) 요금기저											
- 연평균 유형자산											
- 연평균 무형자산											
- 연평균 임차보증금											
- 연평균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나) 투자보수율											

<신설>

**(별지 제17-2호 서식) 영업통계 명세서
(배부기준 변경효과)**

회사명 : (단위:원)

구 분	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합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 서비 스	...	계		
I. 영업수익											
II. 총괄원가											
(1) 영업비용											
(2) 영업외수익											
(3) 투자보수											
(가) 요금기저											
- 연평균 유형자산											
- 연평균 무형자산											
- 연평균 임차보증금											
- 연평균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나) 투자보수율											

<신설>

**(별지 제18호 서식)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주식회사 0000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 000은 본 영업
보고서가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짓 또는 왜곡 없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년 *월 *일

주식회사 0000 담당이사 000 (서
명)

대표이사 000 (서
명)

결표지 뒷면 하단부

1. 본 연구보고서(도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도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